

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규정

(제정: 2023. 2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대학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
-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 관리
- 대학 발전계획 성과지표 관리
- 대학 자율 성과지표 개발 및 점검
- 대학평가 및 각종 재정지원 사업 지표 관리
- 대학 성과 데이터 통합관리
- 대학 성과 결과의 종합적 분석 및 환류
- 그 밖에 대학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 및 행정인력)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, 행정직원,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성과관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교무부처장, 학생취업부처장, 기획부처장, 산학협력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-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-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내외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
- 대학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연구

4. 센터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
5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환류

제9조(환류) ①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, 다음 학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장 재정 및 결산

제10조(재정) 센터의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국고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예·결산) 센터의 예·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